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체육시설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과 스포츠클럽의 정의 및 사용료 감면율을 명확화하고, 체육시설의 범위 및 전용사용료를 개정하여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스포츠클럽의 정의 조항 추가(안 제2조제6호~제8호)
- 나.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추가 및 변경(안 제8조제4호~제8호)
- 다. 사용료 반환시 반환 기준일 추가, 수정 및 반환율 수정(안 제12조)
- 라. 체육시설 위탁운영 계약의 해지 조항 신설(안 제19조)
- 마. 체육시설의 명칭, 위치, 기능 추가 및 수정 (안 별표1)
- 바. 고아시니어스포츠파크, 선산체육관 전용사용료 신설(안 별표2)
- 사. 스포츠클럽 사용료 감면 요율 신설(안 별표7)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6조, 제9조

「스포츠클럽법」 제2조, 제6조, 제9조, 제15조

「스포츠클럽법시행령」 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8. “공공스포츠클럽”이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을 통하여 공익적 목적에 따라 선정된 구미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8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스포츠클럽 지정 종목
5. 지정스포츠클럽
6. 스포츠클럽법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에 의한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환한다”를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한

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반환기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최초 사용일로부터 7일”을 “사용시작일로부터 3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최초 사용일로부터 6일 전부터 최초사용당일까지”를 “체육경기를 목적으로 대관신청 후 사용시작일 2일 전부터 사용당일”로, “50”을 “90”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체육경기를 목적으로 대관신청 후 사용시작일 이후 취소한 경우 :

남은 기간 또는 남은 횟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100분의 90을 반환

라. 체육경기 외 목적으로 대관신청 후 사용시작일 2일전부터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을 반환

마. 체육경기 외 목적으로 대관신청 후 사용시작일 이후 취소한 경우 :
남은 기간 또는 남은 횟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을 반환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0조 및 제21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위탁운영 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에게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미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사용시작일이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1]

체육시설의 범위 (제2조 관련)

1. 전문체육시설

명 칭	위 치	기 능
박정희체육관	구미시 박정희로 375-19 (광평동)	농구, 배구, 각종행사
구미시 복합 스포츠 센터	구미시 박정희로 375-7 (광평동)	볼링, 배구, 농구 등, 각종행사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구미시 박정희로 375-22 (광평동)	육상, 축구, 각종행사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구미시 박정희로 375-20 (광평동)	육상, 축구, 각종행사
복합체육시설	구미시 박정희로 375-20 (광평동)	인라인롤러, 투포환, 농구, 배드민턴, 체육회관 회의실 등
금오테니스장	구미시 산책길 105 (남통동)	테니스 등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구미시 옥계2공단로3길 133 (구포동)	축구, 정구, 테니스, 농구, 족구, 각종행사
국궁장 (금오정)	구미시 3공단1로 219	국궁
고아시니어 스포츠파크	구미시 고아읍 황들길 30	배구, 게이트볼
선산체육관	구미시 선산읍 단계동길 252	배구, 핸드볼

2. 생활체육시설

명 칭	종 류 (종 목)
읍·면·동 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관할 읍·면·동장이 관리하는 실내·외 체육시설

■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9조 관련)

구 분		평 일		토 · 일 · 공휴일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박정희 체육관	주경기장	100,000원	300,000원	150,000원	400,000원
	보조경기장	50,000원	100,000원	80,000원	200,000원
구미시복합 스포츠센터	다목적경기장	80,000원	200,000원	120,000원	300,000원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트랙	60,000원	100,000원	90,000원	200,000원
	필드	150,000원	250,000원	250,000원	350,000원
	행사	600,000원		900,000원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트랙	40,000원	80,000원	65,000원	160,000원
	필드	80,000원	160,000원	160,000원	240,000원
	행사	400,000원		500,000원	
복합 체육시설	인라인롤러경기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투포환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농구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다목적경기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금오 테니스장	실외(1면 기준)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실내(1면 기준)	15,000원	20,000원	20,000원	25,000원
구포동 생활체육 공원	클레이코트(1면 기준)		20,000원	30,000원	40,000원
	축구장	주간	60,000원	70,000원	80,000원
		조기 · 야간	80,000원	100,000원	120,000원
	풋살장	주간	40,000원	50,000원	50,000원
		조기 · 야간	50,000원	60,000원	60,000원
고아시니어 스포츠파크	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선산체육관	다목적구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조기(06:00~09:00), 주간(09:00~18:00), 야간(18:00~23:00) 각 1회를 적용한다.
 - 다만, 필드(축구경기), 테니스장(실내만 해당), 구포동 생활체육공원(클레이코트, 축구장, 풋살장)의 경우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을 적용하고 구포동 생활체육공원의 야간 사용시간은 18:00~22:00으로 한다.
 -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설치 등 준비하는 때부터 그 시설물의 철거 및 체육시설의 정리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또는 보조경기장의 사용인원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행사 중 체육경기 외의 기준에만 적용한다.
- 1,000명 이상 ~ 2,000명 미만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2,000명 이상 ~ 5,000명 미만 : 사용료의 100분의 100 가산
 - 5,000명 이상 : 사용료의 100분의 150 가산
- 박정희체육관 보조경기장의 사용료는 1면당 기준으로 한다.
- 복합체육시설의 농구장, 다목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은 개방시설로 별도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별표7]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제10조 관련)

구 분	대 상	감면 요율
면 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구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및 취약종목 선수 훈련	
	국가 또는 전국·도 단위 체육행사에 출전하는 시 대표선수 훈련	
감 경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100분의 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의사상자 및 의사자유족 또는 의사자가족을 위한 행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을 위한 행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위한 행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위한 행사	
감 경	구미시와의 협약에 따른 행사	100분의 50
	공공스포츠클럽 지정 종목 및 지정스포츠클럽	
감 경	스포츠클럽법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에 의한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100분의 50
○ 감면 요율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만 적용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부속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 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 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 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u><신 설></u>	7.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 츠클럽 중에서 「스포츠클럽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 럽을 말한다.
<u><신 설></u>	8. “공공스포츠클럽”이란 문화 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공 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을 통 하여 공익적 목적에 따라 선 정된 구미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 10. (생 략)	9. ~ 13. (현행 제6호부터 제10 호까지와 같음)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4. 5. (생략)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7조
에 따라 허가 받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납부한 사용료는
그 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단서
신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취소할 경우 다
음 각 목에 따라 반환
가. 최초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

-----.

1. ~ 3. (현행과 같음)

4. 공공스포츠클럽 지정 종목

5. 지정스포츠클럽

6. 스포츠클럽법 제6조(스포츠
클럽의 등록)에 의한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7. 8.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

----- 3근무일 이내에 반
환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
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반환기일을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1. -----

----- 가. 사용시작일로부터 3일 --

료의 전액을 반환

나. 최초 사용일로부터 6일
전부터 최초사용당일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을 반환

<신 설>

<신 설>

<신 설>

2. ~ 4. (생 략)

② (생 략)

<신 설>

나. 체육경기를 목적으로 대
관신청 후 사용시작일 2일
전부터 사용당일 --- 90-

다. 체육경기를 목적으로 대
관신청 후 사용시작일 이
후 취소한 경우 : 남은 기
간 또는 남은 횟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100분의
90을 반환

라. 체육경기 외 목적으로 대
관신청 후 사용시작일 2일
전부터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을 반환

마. 체육경기 외 목적으로 대
관신청 후 사용시작일 이
후 취소한 경우 : 남은 기
간 또는 남은 횟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을 반환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위탁운영 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u>제19조</u> · <u>제20조</u> (생략)	<u>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u> <u>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u> <u>2. 수탁자에게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u> <u>3. 그 밖에 구미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u>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u> <u>제20조</u> · <u>제21조</u> (현행 제19조 및 제20조와 같음)
---------------------------------------	--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절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스포츠클럽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① 지역사회에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단체로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을 것
2. 스포츠클럽 연간운영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대표자 및 스포츠클럽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
4.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를 상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유지할 것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가 스포츠클럽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3.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 사용료의 100분의 100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 사용료의 100분의 80이하

소 관 부 서		체육시설관리과
입 안 자	과 장	추 상 익
	담 당	박 명 희
	담 당 자	윤 다 경 (480-4904)